

의안검토보고서

1. 발의 또는 제출자 : 광영교 의원외 7인
2. 건 명 :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
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별 첨
4. 검 토 의 견 : 별 첨

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7년 4월 17일

행 정 자 치 위 원 회

전문위원 한 봉 전

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본 조례 안은 2007년 4월 12일 광영교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4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에서 조례에 위임하여 정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법 및 절차에 의하면 선임대상 위원이 소속한 기관·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전 승낙 등 추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, 위원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지난하기에 위원의 자격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
- 나.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, 「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등 지급내용과 일부조항 및 자구의 삭제, 정리 등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에 위원선임 자격요건과 선임절차를 명시함(안 제3조).
- 나. 결산검사위원 중 대전광역시의회의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, 그 외의 위원에게 지급할 일비 지급기준을 정함(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).

- 다. 결산검사위원회에 지급할 예비 지급기준을 정함(안 제12조 제2항).
- 라.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재정법」 등과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함(안 제5조제1항 및 제7조, 제8조).

3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안은

「지방자치법」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본 조례로 정하고자하는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일비지급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자하는 사항으로써,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